

## 다종교사회와 종교의 제(諸)문제

### Multi religious communities and religious issues

이 철 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Lee, cheol-ho

Nambu Univ.

#### 요약

종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분열과 통합, 갈등의 문제로 진화되었다. 역사상 종교의 힘은 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회를 해체할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원인 중의 하나 종교문제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종교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많은 종교단체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와 종단이 수 십 수백으로 공존하고 있다. 종교간 갈등과 같은 종교내 종단(宗團)안에서 갈등과 대립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종교계의 정치관여 또는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계가 본격적인 정당창당이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세력화 할 경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이다.

## I. 머리말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의 발달과정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고전적인 기본권으로서 정신적 자유권의 기초로 간주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중세기 교회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에 대한 정항으로부터 출발했으며, 그 후 전제정치(專制政治)에 대한 투쟁에서도 종교상의 투쟁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다. 오늘날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정신적 자유의 원형이며, 모태(母胎)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1]

종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분열과 통합, 갈등의 문제로 진화되었다. 역사상 종교의 힘은 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회를 해체할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종교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많은 종교단체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와 종단이 수 십 수백으로 공존하고 있다. 종교간 갈등과 같은 종교내 종단(宗團)안에서 갈등과 대립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한편 다종교사회의 진입으로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가권력과 종교간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헌법상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계의 정치참여 문제를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본다.

## II. 한국사회와 종교의 제(諸)문제

### 1. 종교의 자유와 공직자 종교편향 문제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을 본 많은 국민들은 무척 당혹스럽고 황당스럽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종교적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조찬기도회’라는 특정 종교행사의 참여는 대통령이 개인이 아닌 공직자인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참석한 것이다. 비록 대통령 개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가 주최한 종교행사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고 다종교사회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신중치 못하고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다.[2]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동은 이번 대통령만이 아니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4선인 황우여의원은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라는 종교편향 발언을 한 바 있다.[3]

### 2. 공공장소 등에서의 종교 세러머니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러머니는 낯익은 풍경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문제가 충돌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운동선수도 골 세러머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대표선수는 개인이기에 앞서 이미 공인(公人)이다. 국가대표 선수는 말 그대로 국가의 대표선수이지 특정종교의 대표 선수가 아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종교와 무관한 세러머니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송에서 특정 종교행위를 내보는 것은 안된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TV가 방송하지 않으면 된다.[4]

### 3.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수차례의 선거를 치루어 오는 동안,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월 25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은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 그러나 종교계 일각에서는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중 제147조 제4항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미해결이라고 보고 있다.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논란 문제는 그간 일부 교회에서 실제 선교를 시도하기도 했고, 더 근본적으로는 투표라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이들이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요당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종교자유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 4. 종교은행 설립 문제

개신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면세 혜택을 통해 축적된 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면 해당 종교단체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은행을 설립하는 즉시 그 은행 설립에 투입된 소득에 대해 조세 원칙, 즉 '소득 있는 곳에 조세있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종교단체가 은행을 설립하면 그 때부터 종교단체가 아닌 기업을 의미한다.

#### 5. 정교분리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우리 헌법 제20조 제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국가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단체에게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또는 정치관여는 가뜩이나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인 우리 사회를 또다시 종교분열로까지 몰고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은 오늘날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機能的實質的 權力統制의 측면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고 방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지 自派 宗教의 既得權保護나 布教, 선교 등의 그릇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Ⅲ. 맺음말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공존과 평화의 출발은 타종교에 대한 인정(認定)이다. 내 종교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종교, 타 종교도 중요하다는 전제가 선행될 때 공존이 가능하다. 타종교에 대한 비방은 다종교사회의 최대 적(敵)이다. 타 종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다종교사회 종교간 공존은 각 종교 종단종파 지도자들의 의식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 참고 문헌 ■

- [1] 小林直樹, 『憲法講義(上)』, 東京大出版會(1980), pp.366.
- [2] 다수의 역대 대통령이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3] 한겨레신문, 2011년 1월 17일, 5면 참조.
- [4] 방송·신문의 PD·기자의 업무 매뉴얼에 스포츠 중계시 종교적인 세리모니를 송출 또는 게재되지 않게 하는 지침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